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교육혁신처) 02-970-9251

제정 2022. 4.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기능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교육혁신 정책 수립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
  - 2. 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체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  - 3. EPiC 핵심역량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
  - 4. 전공역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
  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교육혁신부처장이 된다.
  -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혁신처장, 교육혁신부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입학처장,

정보전산원장, 공동실험실습관장, 생활관장, 공학교육혁신센터장으로 구성하고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임명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,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(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심의를 포함)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교육혁신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장이 정한다.

부 칙(제684호, 2022. 4. 2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